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특허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8.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특허청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1,592”를 “1,5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90”을 “1,5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74”를 “1,578”로 한다.

별표 3 제1호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허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6조 관련)

제36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7
일반직 계	7
6급 이하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u>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8장 <u>한시조직</u> <u><신 설></u>	제31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u>제36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특허청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92</u>	<u>1,596</u>	+4
•	•	•	
•	•	•	
일반직 계	<u>1,590</u>	<u>1,594</u>	+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74</u>	<u>1,578</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